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추가〉
■ 서일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040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일준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08. 21.
3. 회 부 일 : 2024. 08.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총포·도검 등을 활용한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총포·도검 등의 소지자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총포·도검 등의 소지자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포함하여 총포·도검 등의 잠재적인 범죄사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3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하 ‘총포등’) 소지자의 결격사유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금고 이상의 <u>실형</u> 을 선고받고 <u>그 집행</u> 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 <u>형</u> ----- --- <u>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집행</u> ----- ----- -----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총포화약법」은 형사처벌로 인한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 사유를 제13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고 있음¹⁾. 동 조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정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집행유예는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²⁾.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비해 사범부가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총포등을 소지할 경우 국민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결격사유로 추가하려는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1) 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 2.(생략)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 ③ (생략)

2)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참고로 경찰청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결격사유에 추가 하려는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5